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59 발의연월일: 2025. 2. 14.

발 의 자:서영교·김준형·박희승

송재봉 • 전현희 • 김승원

정준호 · 임오경 · 박홍배

윤준병 · 임광현 · 모경종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살인, 강도, 강간, 인신매매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들은 범죄로 인해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사건 이후에도 법적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가해자와 맞서야 하는 부담이 매우 크며, 피해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

특히 강력범죄 사건은 법적 쟁점이 복잡하고,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법정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 지원이 절실함.

그러나 현행법상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등에 대해서는 국선변호 사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근거 조항이 없음.

이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규정을 신설

하여 국선변호사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사법정의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8조의3신설).

법률 제 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조의3(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피해자 및 그 법정대 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라 한다)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 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 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④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 ⑤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 미만인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 를 선정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8조의3(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
	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
	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
	사(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라
	한다)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
	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u>수 있다.</u>
	③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
	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
	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
	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
	<u>칙으로 정한다.</u>
	④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u>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u> <u>거나 등사할 수 있다.</u>

- ⑤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 미만인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